옥천군 공고 제2022-578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국적취득 축하금 신청란 추가 및 전입장려지원금 수령방법 변경 등 상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학자금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삭제(안 제2조제2항)

○ [별지 제1호서식] 학자금 지원 신청란 삭제 , 국적 취득 축하금 신청란 신설, 전입장려지원금 수령방법 변경(향수OK카드)

4. 의견제출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781, FAX : (043)731-1984

가.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규칙 제 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인구증가 지원신청서

기 본 현 황						
신청분야	☐ 전입장려지원 ☐ 출산장려지원 ☐ 결혼정착지원 해당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장려지원	전입보상금	☐ 개인전입 ☐ 학생 추가장려금				
	기타	☐ 관내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 쓰레기종량제봉투 ☐ 교통비 지원				
	전입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향수OK카드번호	
	학생 추가장려금 (차)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	전입일자
	국적 취득 축하금	성 명	생년월일	국적취득일	국적 취득 전 주소지	향수OK카드번호
출산장려지원	신청항목	☐ 출산용품 ☐ 출산축하금 ※ 해당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신생아 성 명		생년월일		출생일자	
	관 계		자녀수	자녀중 째		
결혼정착금 지 원	관계	성명	생년월일	혼인일	전입일자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

※첨부서류

1. 전입장려지원 대상자 : 향수OK카드 사본
2. 학생 추가장려금 지원 대상자 : 재학증명서
3. 출산장려 지원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 :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4. 국적취득 축하금 지원대상자 :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5. 결혼정착금 지원 대상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명의 통장사본
6.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함.

(뒷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세대원 현황, 혼인일자 등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옥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전입 가족현황, 혼인일자 등) 활용

제3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증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 및 신청방법) ① (생략) ② 학자금의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매년 학자금의 지급규모,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등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다자녀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나. 학자금 납입증명서 다.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인과 해당 읍·면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제2조(지원 및 신청방법)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⑨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